

# 추가시험 실시에 대한 안내



2022.12.12.

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박병도 교수 (043-261-2721)

## I 관련근거

- 『충북대학교 학칙』제68조(시험)
- 『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』제81조(추가시험 절차)

# Ⅱ 규정해설

### □ 학칙 제68조

- (추가시험 대상)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(학기말시험) 또는 임시시험(학기말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)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
- (규정사항)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 실시. 즉 본시험 종료시간으로부
  터 240시간 이내에 추가시험 시행이 완료되어야 함.

#### □ 학사운영규정 제81조

- (학생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) 소속대학장에게 추가시험인정원(서식 제15호) 제출.
- **(소속 단과대학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)** 추가시험인정원을 검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.
- (담당교수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) 성적입력기간 내에 추가시험 실시.
  즉, 시험 종료 후 240시간보다 성적 입력 기간보다 길 경우, 성적입력 기간 이내 추가시험 실시.

# III 학생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및 유의사항

#### □ 이행사항 제1호: 공결신청 및 추가시험인정원 동시제출

- 추가시험인정원은 소속학과 조교를 통해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, 학과사무실로 문의할 것.
- 이행사항 제1호를 완료하기 전에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지 말 것. 이 단계에서 담당교수가 규정상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음.

#### □ 이행사항 제2호: 담당교수에게 이메일을 작성

- 공결신청과 추가시험인정원 모두를 접수 완료하였다면 담당교수에게 이메 일을 보낼 것.
- 이메일을 작성할 때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할 것.
  가. 공결신청과 추가시험인정원 모두를 접수 완료하였다는 진술
  나. 수업이 있는 요일 및 교시
  - 다. 평일 09-12시 또는 13-18시 사이 중에서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의 기간 중 추가시험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일시 3개(우선순위로 열거)
- 담당교수는 이 단계에서 추가시험 문제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며, 추가시험 인정원 공문을 전달받은 즉시 추가시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전화로 알리고,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이메일로 통보함.
- 추가시험인정원 제출은 완료되었으나, 승인 및 통보가 지체되는 경우 담당 교수가 해당 학과 사무실 및 단과대학에 처리 상황을 확인하므로, 추가시 험인정원 제출 즉시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.

#### □ 유의사항

 소속 학과 조교가 추가시험인정원 관련 행정사항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고, 담당교수 통보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추가시험인정원 승인 및 통보가 늦어지면 추가시험을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. 따라서 <u>학생이 학</u> 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추가시험인정원 처리 상황을 챙겨야 함. 소속 학과 조교가 추가시험인정원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 이 문건을 제시할 것. 담당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소속 단과대학장 명의의 추가시험인정원 승인 공문 없이 추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음. 추가시험을 보고 싶다면 추가시험인정원 승인을 받아 올 것.

# 추 가 시 험 인 정 원

대학	학과(부)	학년	반
학번 :		성명	

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기시험(기말)에 응시할 수 없이 별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인정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사 유(관련서류 첨부) :

년도	학기	교과목	담당 교수	시험 일시	년도	학기	교 과 목	담당 교수	시험 일시

20 년 월 일

<u>୧</u>)

위 사실을 승인함.

결	계	주 무	교학담당 부 학 장	학 장	신 청 인 지도교수
재					20 년 월 일

학장 귀하